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19. 10. 2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공급유형	일반공급 신청자 []		특별공급 신청자 []
	청년 []	신혼부부 []	청년 [] 신혼부부 []
신청내역	주택위치	전용면적(m ²)	
	주택유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3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리스트안암 사업주체 『주식회사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사투자회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0. 5. 27.>

서약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서약 내용	일반공급 신청자 []	청년[]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임
		신혼부부[]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 4.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임. 5. 신혼부부는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임.
	특별공급 신청자 []	청년[]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임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나.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신혼부부[]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 4.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임. 5.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6. 신혼부부는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임.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 신청이 위 작성 내용과 동일함을 서약합니다. 향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리스트안암 사업주체 『주식회사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귀하

유의사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2. 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 자 전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서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을 임차인의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의무준수 협약서(임차인)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아래 임대차 물건지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임차인 자격을 모두 갖추었음은 물론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판명된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이 취소됨은 물론 본인은 임차중인 주택에서 즉시 퇴거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아 래 -

항 목	내용
가. 임대차 물건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3, 리스트안암 (호)
나. 우선모집 임차인 자격	무주택 청년(만19~39세, 신혼부부 포함), 무주택 고령자(만65세 이상) ※신혼부부.고령자일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년 월 일

임차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및 세대주와의 관계 (당첨되어 혼인으로 구성될 입주세대 기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비고
본인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예비배우자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고려대역 청년안심주택 리스트안암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위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대표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리스트안암 사업주체 『주식회사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사투자회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임차인)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임차인 상담 및 자격 확인, 임대차 계약관리 등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업무
- 수집 · 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주택소유 정보, 건강(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집주인 임대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폐지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폐지일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 및 공공기관 등의 정책자료 활용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업무를 재위탁받은 금융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임대차 계약관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단, 주민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해 제공한다), 기금융자 및 임대차 계약 관리와 관련하여 수집 · 이용한 정보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정책수립,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민등록기준)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고려대역 청년안심주택 리스트안암은 고객관리,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등
2	개인정보 수집방법	고려대역 청년안심주택 리스트안암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직접 입력을 통한 등록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은 부동산 임대를 위한 매물관리, 부동산 임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사유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일 정한 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 근거 :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보존기간 : 5년
5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에이치파트너즈(주), 삼성물산(주), DNK, KFNS(주) 등 ▷ 이용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심사 및 당첨자 선정, 임대차 계약 및 임대관리, 임대 마케팅, 임대차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입주고객서비스 등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인의 임대주택공급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갱신계약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해당자만 작성)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임신 중에 있음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성실하게 출산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출산여부 관련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임신·불법 낙태로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등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신청유형	☐ 청년	☐ 신혼부부	
진단서 발급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요양기관명			
담당의사(면허번호)	()		

※ 첨부 : 임신진단서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